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77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4
1. 결의안의 제안취지	4
2. 주요 내용 검토	4
1) 북한의 대러 파병에 대한 검토	5
2) 북한 병사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검토	7
3) 북한 포로 송환 및 보호조치에 대한 검토	8
※ 참고자료	10
1. 유엔헌장	10
2.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2
3.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14

I. 제안 및 회부

1. 제 안 자 : 김기현의원 등 22인
2. 제안일자 : 2025년 2월 24일
3. 회부일자 : 2025년 2월 25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전장에 나선 북한 병사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권 유린의 참상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 청년 수만 명을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에 가담한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이뿐 아니라,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를 통해 알려

진 북한군의 파병 실태와 북한 병사들이 처한 현실은 참혹 그 자체이다. 10년간 복무하며 부모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고, 가족은 파병 사실조차 모른다고 했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로 보내지면서도 ‘해외 훈련’이나, ‘유학’이란 말로 속임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포로는 변절”이라고 세뇌당해 충상을 입고서도 자폭용 수류탄을 떠올리고 있으며, 이미 북한군 절반 가까이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다고도 증언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병사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북 제재 및 인권 보호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불법행위로서, 북한이 파병한 전투 병력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러시아에서 철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겪고 있는 유례 없는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

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포로를 북한으로 다시 송환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인권침해라 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병사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나아가 당사자가 원할 경우, 대한민국으로의 이송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임. 더구나,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포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군의 파병 실태와 북한 병사들이 처한 인권 유린은 참혹 그 자체라 할 것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불법적인 전투병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에 즉각적인 전투병 철수를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병사가 직면하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조사 및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병사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나아가 당사자가 원할 경우, 대한민국으로의 이송 등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보호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

Ⅲ. 검토의견

1. 결의안의 제안취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북한의 전투병 파병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임을 지적하고,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겪는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병사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대한민국 이송 등 실질적 보호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검토

동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국제법 위반 및 북한 병사들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대해 포로 송환 및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총 3개의 주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의안의 주요내용>

주 문	주요내용
안 제1호 (북한 파병 철군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즉각적·완전·무조건적이지 철군을 강력히 촉구
안 제2호 (북한 병사 인권 실태 조사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 파병 북한 병사들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
안 제3호 (포로 안전 및 보호조치 강화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생포 포로의 북한 송환을 금지하며, 북한 병사의 안전과 인권 보장, 자유 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이송 등 실질적 보호조치를 정부가 적극 시행할 것을 촉구

1) 북한의 대러 파병에 대한 검토

2024년 10월 18일 국가정보원은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함.¹⁾ 이는 북한군의 대러 파병 사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것임.

이후 2025년 4월 28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북한군이 참전했다고 보도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하였음.²⁾ 노동당 중앙

1) 북한은 2024년 10월 8일부터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하기 시작했으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약 1,500명의 병력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함. 이는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해군함대가 북한 해역에 진입한 사례로, 현재 북한군은 블라디보스토크·우수리스크·하바롭스크·블라고베젠스크 등지에 분산 배치되어 적응 훈련 중이며, 곧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무기를 지급 받고 러시아군으로 위장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파병 직전 특수부대를 직접 참관한 바 있음. (‘국정원,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2024.10.18.)

2)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10.17. EU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1만 명의 러시아 파병 준비를 주장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10월 18일 우리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 이후 미국 국무부와 NATO도 이를 확인하면서 사실상 파병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였음.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뒤 북한이 대러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임. 이는 미국의 중재로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에서 북한의 기여를 과시하고, 전후 복구 사업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추측됨. (‘북한, ‘러시아 파병’ 공식 인정... 어떤 의미 있나?’ BBC 코리아, 2025.4.28.)

군사위원회는 입장문에서 북한군이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작전에 참여해 ‘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발휘했다고 주장함.

앞서 같은 달 26일에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북한군의 작전 참여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의 ‘영웅적 행동’을 치하한 바 있음.

이러한 북한의 대러 파병은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음. 유엔헌장 제2조 제4항³⁾은 국가 간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번 파병은 이를 위반한 것임.

따라서 북한의 대러 파병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고려할 때, 북한이 파병한 전투 병력을 즉각적·완전·무조건적으로 러시아에서 철군시킬 것을

◦ 쿠르스크 지역 :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쿠르스크주(州)에는 두 개의 원자력 발전 시설이 있음.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 있음. 최근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주를 침공해 일부 지역에서 교전이 벌어지면서 안전 우려가 제기됨. 파병된 북한군은 대부분이 쿠르스크에 투입됐다고 알려짐.



3) 「유엔헌장」 제2조 제4항

제2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4.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강력히 촉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외교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문안에서, 유엔 헌장(제2조 제1·3·4항) 등 국제법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북한 병사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검토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⁵⁾에 따르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병사들이 심각한 인권 유린을 겪고 있음이 확인됨. 이들은 열악한 군사 환경 속에서 전투 과정 중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노출된 채 강제로 전투에 투입되었으며, 자신이 전장에 투입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파병된 것으로 확인됨.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4)	<table><tr><th>결의안</th><th>외교부 수정의견</th></tr><tr><td>주문(p.1) 대한민국 국회는 <u>유엔 안보리 결의</u>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 ... (후략)</td><td>주문(p.1) 대한민국 국회는 <u>유엔 헌장 등 국제법</u>을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 ... (후략)</td></tr></table>	결의안	외교부 수정의견	주문(p.1) 대한민국 국회는 <u>유엔 안보리 결의</u> 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 ... (후략)	주문(p.1) 대한민국 국회는 <u>유엔 헌장 등 국제법</u> 을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 ... (후략)
결의안	외교부 수정의견				
주문(p.1) 대한민국 국회는 <u>유엔 안보리 결의</u> 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 ... (후략)	주문(p.1) 대한민국 국회는 <u>유엔 헌장 등 국제법</u> 을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 ... (후략)				

5) ①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달 31일 공개한 ‘북한군 전투 영상 기록물’에서 파병 부상병들의 자폭 사실을 언급하며 ‘영웅적 희생정신’이라고 치켜세웠음.(BBC 코리아, 2025. 9. 3.)

② “北에서 포로는 변절, 한국 가고 싶다” 우크라이나 전장서 붙잡힌 북한군 단독 인터뷰, 조선일보, 2025. 2.20.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⁶⁾의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되며, 언론에서 알려진 대로라면 부상병 치료나 휴식 등 인도적 처우마저 심각하게 결여된 상황임.

이에 국회가 북한 파병 병사들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정부에 국제사회와 함께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북한 포로 송환 및 보호조치에 대한 검토

북한 포로의 송환과 관련하여,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8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을 비롯한 국제인도법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기반한 송환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 포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귀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인권 보호와 국제규범 준수 측면에서 핵심적 기준임.

6)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약속한다.
2. 이러한 완전한 금지를 위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사용하는 것은 과도기 동안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예외적 조치로서 할 수 있으며, 아래에 규정하는 조건 및 보장사항에 따른다.

제2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은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다만,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포로 송환 과정에서 안전 확보와 외교적 신중성이 동시에 요구되며, 국제 규범과 지역 안보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는 신중함이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가되, 구체적인 송환 등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양자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외교부는 포로 개인의 자유 의사를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결의안 주문에 ‘자유 의사에 반해’를 추가⁷⁾할 것을 제안함.

문 의 처

02) 6788-5270

결의안	외교부 수정의견
주문(p.3) 3. 대한민국 국회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포로를 북한으로 다시 송환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인권침해라 규정하고, … (후략)	3. 대한민국 국회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포로를 <u>자유 의사에 반해</u> 북한으로 다시 송환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인권침해라 규정하고, … (후략)

유엔헌장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유엔헌장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국제연합헌장에 동의하고, 국제연합이라는 국제 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장 (Chapter)	제목 (Title)	조문 범위 (Articles)	
제1장	목적과 원칙	제1조~제2조	
제2장	회원국의 지위	제3조~제6조	
제3장	기관	제7조~제8조	
제4장	총회	제9조~제22조	
제5장	안전보장이사회	제23조~제32조	구성/ 임무와 권한/ 표결/ 절차
제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33조~제38조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제39조~제51조	

장 (Chapter)	제목 (Title)	조문 범위 (Articles)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제8장	지역적 약정	제52조~제54조	
제9장	경제적 및 사회적 국제협력	제55조~제60조	
제10장	경제사회이사회	제61조~제72조	구성/ 임무와 권한/ 표결/ 절차
제11장	비자치지역에 관한 선언	제73조~제74조	
제12장	국제신탁통치제도	제75조~제85조	
제13장	신탁통치이사회	제86조~제91조	구성/ 임무와 권한/ 표결/ 절차
제14장	국제사법재판소	제92조~제96조	
제15장	사무국	제97조~제101조	
제16장	잡칙	제102조~제105조	
제17장	과도적 안전보장조치	제106조~제107조	
제18장	개정	제108조~제109조	
제19장	비준 및 서명	제110조~제111조	

이상의 증거로서, 연합국 정부의 대표들은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작성하였다.

※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내용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목차만 제시

참고 2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향유하는 평등하며 불가양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이룩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국제연합헌장 특히 제55조에 따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이의 준수를 촉진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유의하며,
1975년 12월 9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만인의 보호에 관한 선언에 유의하고,
세계적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실효적이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이 조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하게 될 국제문서나 국내입법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전쟁상태, 전쟁의 위협, 국내의 정치불안정 또는 그 밖의 사회적 긴급상황 등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3. 상관 또는 당국의 명령은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제3조 1.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와 같이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관련국가에서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존재하여 왔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제4조 1.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기나라의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며, 고문 미수, 고문 공모 또는 가담에 해당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다룬다.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일부만 제시

참고 3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 {Geneva Convention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the Prisoners of War of August 12, 1949}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29년 7월 12일자의 제네바 협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1949년 4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한 외교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정부의 아래에 서명한 전권위원은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제4편 포로 신분의 종류

제1부 직접 송환 및 중립국에서의 수용

제109조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충돌 당사국은 중상 및 중병의 포로를 그의 수와 계급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들이 여행에 적합할때까지 치료한 후에 다음조 제1항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적대행위중 관계 중립국의 협력에 의하여 다음조 제2항에서 언급하는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의 중립국내에서의 수용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충돌 당사국은 장기간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던 건강한 포로의 직접 송환 또는 중립국내에서의 억류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송환의 대상이 되는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는 적대 행위의 기간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송환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10조 다음의 자는 직접 송환하여야 한다.

1. 불치의 부상자 또는 병자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기능이 현저히 감퇴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2. 1 년이내에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진단된 부상자 또는 병자로서 그의 상태가 요양을 필요로 하고 또한 정신적 및 육체적 기능이 현저히 감퇴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3. 회복한 부상자 또는 병자로서 정신적이나 육체적 기능이 현저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감퇴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의 자는 중립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다.

1. 부상 또는 발병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복된다고 예상되는 부상자나 병자로서 중립국에서 요양하면 일층 확실하고 신속히 회복한다고 인정되는 자.
2. 계속하여 포로의 신분으로 있으면 정신 또는 육체의 건강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진단되는 포로로서 중립국에 수용하면 이 위험이 제거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자. 중립국에 수용된 포로가 송환되기 위하여 충족시킬 조건 및 이들 포로의 지위는 관계국간의 협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립국에 수용되어 있는 포로로서 다음 부류에 속하는 자는 송환하여야 한다

다.

1. 건강 상태가 직접 송환에 관하여 정한 조건에 이를 정도로 악화한 자.
2. 정신적 또는 육체적 기능이 요양 후에도 현저히 악화되어 있는 자. 직접 송환 또는 중립국에서의 수용의 이유로 되는 장애 또는 질병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 협정이 관계 충돌 당사국간에 체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의 종류는 본 협약에 부속된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의 직접 송환 및 중립국에서의 수용에 관한 표본 협정과 혼성 의료 위원회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1조 억류국, 포로가 속하는 국가 및 그 2국간에 합의된 중립국은 적대 행위가 종료할 때까지 그 중립국 영토내에 포로를 억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의 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2조 적대행위가 시작된 때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를 진찰하고 그 포로에 관하여 적절한 모든 결정을 취하도록 혼성 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혼성 의료위원회의 임명, 임무 및 활동에 관하여는 본 협약 부속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억류국의 의료당국이 명백히 중병이라고 인정하는 포로는 혼성 의료위원회의 진찰을 거치지 않고 송환할 수 있다.

제113조 억류국의 의료당국이 지정한 포로외에 다음 부류에 속하는 부상자나 병자인 포로는 전조에 정하는 혼성 의료위원의 진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동일 국적을 갖는 의사 또는 당해 포로 소속국의 동맹국인 충돌 당사국 국민인 의사로서 수용소내에서 그 임무를 행하는 자가 지정한 부상자 및 병자.
2. 포로 대표가 지정한 부상자 및 병자.
3.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포로에게 원조를 주는 단체로서 그 국가가 정당히 승인한 기관에 의하여 지정된 부상자 및 병자. 전기의 3부류의 하나에 속하지 않는 포로도 이들 부류에 속하는 자의 진찰 후에는 혼성 의료위원회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 혼성 의료위원회의 진찰을 받는 포로와 동일한 국적을 갖는 의사 및 포로대표에 대하여서는 그 진찰에 입회함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14조 재해를 입은 포로는 고의로 상해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환 또는 중립국에서의 수용에 관하여 본 협약에 규정된 혜택을 향유한다.

제115조 징계벌이 과하여 짐으로서 송환 또는 중립국내에서의 수용에 적합한 자는 처벌의 미료를 이유로 억류하여 두어서는 아니된다. 소추나 유죄판결을 받고 억류된 포로로서 송환 또는 중립국내에서의 수용이 지정된 자는 억류국이 동의한 때에는 사법 절차 또는 형의 만료전에 송환 또는 중립국 내에서의 수용의 혜택을 향유한다. 충돌 당사국은 사법 절차 또는 형 만료까지 억류되는 포로의 성명을 상호 통고 하여야 한다.

제116조 포로의 송환 또는 중립국 이송의 비용은 억류국의 국경으로부터는 포로가 속하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7조 송환된 자는 현역 군무에 복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부 적대행위 종료시의 포로의 석방과 송환

제118조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 적대행위의 종료를 위하여 충돌 당사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상기 취지의 규정이 없거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억류국은 전항에 정하는 원칙에 따라 지체 없이 송환 계획을 작성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전항의 어느 경우에도 채택된 조치는 포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포로 송환의 비용은 여하한 경우에도 억류국과 포로 소속 국에 공평히 할당하여야 한다. 이 할당은 다음 기초에 따라 행하여 져야 한다.

가. 양국이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포로 소속 국은 억류국 국경으로부터의 송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양국이 인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억류국은 자국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또는 포로 소속국 영토에 가장 가까운 자국의 승선항에 이르기 까지의 포로 수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관계국은 기타의 송환비용을 공평히 할당하기 위하여 서로 협정하여야 한다. 이 협정 체결은 여하한 경우에도 포로의 송환을 지연시키는 이유로 하지 못한다.

제119조 송환은 제118조 및 다음항 이하의 규정을 고려하여 포로의 이동에 대하여 본 협약 제46조로부터 제48조까지 정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송환에 제하여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포로로부터 압수한 유가물 및 억류국의 통화로 교환하지 않은 외국 통화는 포로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송환에 있어서 포로에게 반환하지 않는 유가물 및 외국 통화는 제122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로정보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포로는 그 개인 용품과 수령한 통신 및 소포를 휴대함이 허락되어야 한다. 이들 물품의 중량은 송환조건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 포로가 휴대할 수 있는 적당한 중량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각 포로는 여하한 경우에도 적어도 25키로그램의 물품을 휴대할 수 있어야 한다. 송환된 포로의 기타 개인 용품은 억류국이 보관하여야 한다. 이들 개인 용품은 억류국이 포로의 소속국가와 수송조건 및 수송비용의 지불을 정하는 협정을 체결하면 곧 포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가 진행중인 포로는 그러한 소추가 종료될 때까지 그리고 필요하면 형의 종료시까지 억류할 수 있다. 이것은 위반행위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포로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충돌 당사국은 소추 종료시까지 또는 형의 종료시까지 억류되는 포로의 성명을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 충돌 당사국간의 협정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분산된 포로를 수색하고 또한 가급적 속히 포로를 송환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일부만 제시